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1다26445 대여금
원고, 상고인 이○○
성남시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 피상고인 박○○
서울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2. 15. 선고 2010나984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3.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청구가 서울 ○○○ 휴게텔(이하 '이 사건 휴게텔'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양도대금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석명을 요구받고,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이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후 이 사건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로 변경하거나 청구원인에 대여금 청구를 추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청구가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청구라고 보아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및 남편 강○○과 함께 이 사건 휴게텔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다가 2008. 12. 10.경 피고에게 위 휴게텔의 영업을 1억 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휴게텔을 합법적인 휴게텔이 아니라 성매매업소로 운영할 목적으로 양수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의 그러한 영업양수 목적을 잘 알고 성매매업소 영업을 위한 기존 시설을 그대로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피고가 성매매에 제공할 영업시설과 점포를 확보하기 위하여 휴게텔을 빙자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박병대